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청 소속기관인 세관에 인천항 통합검사장 신축에 따른 해상특송 수입물품 등에 대한 현장검사와 마약 밀수에 대한 수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6명(6급 3명, 7급 5명, 8급 1명, 전문경력관 다군 7명)을 증원하되 증원하는 인력 중 5명(전문경력관 다군 5명)은 평가대상 정원으로 정하고, 관세청 소속기관인 세관에 수입물품 현장검사를 위하여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정원 52명(6급 9명, 7급 20명, 8급 14명, 9급 9명)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 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관세청의 정원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과 세관의 정원 34명(6급 7명, 7급 9명, 8급 9명, 9급 9명)을 감축하려는 내용으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12.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관세청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정원 중 2)수입물품 현장검사 7명, 3)수입물품 현장검사 10명, 4)특송물품 현장검사 30명, 5)특송물품 현장검사 18명을 그 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기간을 1년 연장(2024년 12월 31일까지)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관세청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고, 업무영역 확대를 통한 전문역량 활용 제고를 위해 관세청 소속기관 기술직 부서장의 보임범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12. 1. ~ 12. 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4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제4호 중 “전산장비 및 통신망”을 “전산장비”로 한다.

7. 통신망 관리

제6조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제8호를 삭제한다.

3. 금수품(국가기밀에 관한 문서 및 물품, 위조화폐, 음란도서 및 물품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교역제한품(전략물자, 첨단기술에 관한 문서 및 물품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범칙수사업무의 기획·지도 및 조정

제8조제2항 중 “과학기술서기관·공업사무관”을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공업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으로, “공업사무관으로”를 “공업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로 한다.

제10조의2제2항 중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품목분류3과장·품목분류4과장”을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공업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품목분류2과장

· 품목분류3과장·품목분류4과장”으로, “행정사무관으로, 품목분류2과장은 공업사무관”을 “공업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으로 한다.

제11조제12항 본문 중 “과장·담당관·조사관·검사관은 행정사무관으로, 분석실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사무관”을 “과장·조사관·검사관은 공업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서기관으로, 감사담당관·수출입물류과장·통관정보과장·여행자통관1과장·여행자통관2과장·특송우편총괄과장·조사총괄과장·마약조사1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장비관리과장 및 전산정보관리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공업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협업검사센터장은 서기관·공업사무관”을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감사담당관·협업검사센터장·수출입물류과장·통관정보과장·장비관리과장·전산정보관리과장·분석실장·여행자통관1과장·여행자통관2과장·특송우편총괄과장·조사총괄과장·마약조사1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공업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3항 본문 중 “과장·담당관·심사관·조사관·검사관은 행정사무관으로, 분석실장은 공업사무관으로, 감시관은 해양수산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분석관은 공업사무관”을 “과장·담당관·심사관·조사관·검사관·감시관·분석실장·분석관은 공업사무관·해양수산

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세관
운영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공업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전
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감사담당관, 수출입기
업지원센터장”을 “세관운영과장·감사담당관·수출입기업지원센터장·
협업검사센터장”으로, “통관총괄과장·통관검사1과장·수출입물류과장
·물류감시과장·신항통관감시과장·신항통관검사1과장·심사총괄과
장·자유무역협정검증과장·조사총괄과장”을 “통관총괄과장·통관검사
1과장·수출입물류과장·물류감시과장·장비관리과장·신항통관감시
과장·신항통관검사1과장·심사총괄과장·자유무역협정검증과장·분
석실장·조사총괄과장”으로,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부산세관의
분석실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사무관으로, 평택세관의 물류감시
과장 및 울산세관의 감시과장은 해양수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장비관리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공업사무관
·해양수산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협업검사센터장은 서기관·공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를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공업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전산사무관·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14항
본문 중 “통관지원과장은 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
로, 조사심사과장은 해양수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
으로,”를 “통관지원과장·조사심사과장 및”으로, “행정사무관으로 보한
다”를 “공업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

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공업사무관·전산
사무관·행정사무관”을 “공업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전산사무관·방
송통신사무관·행정사무관”으로 한다.

별표 1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속초세관	강원특별 자치도 속초시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고성군·양양군
동해세관	강원특별 자치도 동해시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동해시·태백시·삼척시·영월군· 평창군·정선군·원주시·춘천시·홍천군·횡성군·화천군 ·양구군·인제군
파주세관	경기도 파주시	경기도 파주시·고양시·동두천시·양주시·포천시·의정부시 ·구리시·남양주시·가평군·연천군,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군산세관	전북특별 자치도 군산시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충청남도 보령시·서천군
전주세관	전북특별 자치도 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익산시·김제시·정읍시·남원시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임실군·순창군·부 안군·고창군

별표 3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속초세관	고성지원센터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고성 남북출입시설 에 한정한다)
동해세관	원주지원센터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춘천시·홍천군· 횡성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전주세관	익산지원센터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별표 4 중 총계 “366”을 “363”으로 하고, 일반직 계 “365”를 “362”로 하며, 행정사무관 “45”를 “44”로 하고, 관세주사 “94”를 “93”으로 하며, 관세주사보 “75”를 “74”로 하고, 별표 4의2 중 총계 “374”를 “371”로 하고, 일반직 계 “373”을 “370”으로 하며, 행정사무관 “46”을 “45”로 하고, 관세주사 “101”을 “100”으로 하며, 관세주사보 “77”을 “76”으로 한다.

별표 8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4,799”를 각각 “4,781”로 하고, 관세주사 “761”을 “757”로 하며, 관세주사보 “883”을 “881”로 하고, 해양수산주사보 “61”을 “59”로 하며, 관세서기 “1,012”를 “1,005”로 하고, 해양수산서기 “98”을 “97”로 하며, 관세서기보 “772”를 “768”로 하고, 운전서기보 “75”를 “72”로 하며, 방호서기보 “31”을 “30”으로 하고, 사무운영서기보 “87”을 “86”으로 하며, 전문경력관 다군(X-Ray 검색 및 관독 담당) “132”를 “139”로 하고, 별표 8의2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4,809”를 각각 “4,791”로 하고, 관세주사 “856”을 “852”로 하며, 관세주사보 “904”를 “902”로 하고, 해양수산주사보 “62”를 “60”으로 하며, 관세서기 “991”을 “984”로 하고, 해양수산서기 “95”를 “94”로 하며, 관세서기보 “692”를 “688”로 하고, 운전서기보 “75”를 “72”로 하며, 방호서기보 “31”을 “30”으로 하고, 사무운영서기보 “62”를 “61”로 하며, 전문경력관 다군(X-Ray 검색 및 관독 담당) “132”를 “139”로 한다.

별표 10 제2호나목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업무	정원	평가기간
1) 수입물품 현장검사(세관관서)	7명 (7급 2명, 8급 3명, 9급 2명)	2024년 12월 31일까지

2) 수입물품 현장검사(세관관서)	10명 (7급 5명, 8급 5명)	2024년 12월 31일까지
3) 특송물품 현장검사(세관관서)	30명 (7급 2명, 8급 4명, 9급 2명, 전문경력관 나군 7명, 전문경력관 다군 15명)	2024년 12월 31일까지
4) 특송물품 현장검사(세관관서)	18명 (7급 2명, 8급 2명, 9급 1명, 전문경력관 나군 4명, 전문경력관 다군 9명)	2024년 12월 31일까지
5) 특송물품 현장검사(세관관서)	10명 (6급 1명, 7급 1명, 9급 1명, 전문경력관 나군 3명, 전문경력관 다군 4명)	2024년 12월 31일까지
6) 특송물품 현장검사(세관관서)	5명 (전문경력관 다군 5명)	2025년 12월 31일까지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과 별표 3의 군산세관관 및 전주세관관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의3(정보데이터정책관) ① ~ ③ (생략) ④ 정보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보데이터정책관을 보좌한다. 1. ~ 6. (생략) <u><신설></u> ⑤·⑥ (생략) ⑦ 시스템운영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보데이터정책관을 보좌한다. 1. ~ 3. (생략) 4. <u>전산장비 및 통신망 관리</u> 5. ~ 9. (생략)	제3조의3(정보데이터정책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1. ~ 6. (현행과 같음) 7. <u>통신망 관리</u> ⑤·⑥ (현행과 같음) ⑦ ----- -----. 1. ~ 3. (현행과 같음) 4. <u>전산장비</u> ----- 5. ~ 9. (현행과 같음)
제6조(조사국) ①·② (생략) ③ 조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2. (생략) <u><신설></u>	제6조(조사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2. (현행과 같음) 3. <u>금수품(국가기밀에 관한 문서 및 물품, 위조화폐, 음란도서 및 물품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교역제한품(전략물자,</u>

4. ~ 18. (생략) ④ 삭제 ⑤ (생략) ⑥ 국제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삭제 2. ~ 7. (생략) 8. <u>금수품(국가기밀에 관한 문서 및 물품, 위조화폐, 음란도서 및 물품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교역제한품(전략물자, 첨단기술에 관한 문서 및 물품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범칙수사업무의 기획·지도 및 조정</u> 9. ~ 11. (생략)	<u>첨단기술에 관한 문서 및 물품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범칙수사업무의 기획·지도 및 조정</u> 4. ~ 18.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⑥ ----- -----. 2. ~ 7. (현행과 같음) <u><삭제></u> 9. ~ 11. (현행과 같음)
제8조(중앙관세분석소) ① (생략) ② 중앙관세분석소에 총괄분석과와 분석관 3인을 두되, 총괄분석과장은 <u>과학기술서기관·공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u>	제8조(중앙관세분석소)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공업사무관·해양수산사</u>

로 보하고, 분석관은 <u>공업사무관</u> 으로 보한다.	<u>무관</u> · <u>전산사무관</u> · <u>방송통신사무관</u> ----- <u>공업사무관</u> · <u>해양수산사무관</u> · <u>전산사무관</u> · <u>방송통신사무관</u> 또는 <u>행정사무관</u> 으로 ---.
제10조의2(관세평가분류원) ① (생략)	제10조의2(관세평가분류원) ① (현행과 같음)
② 관세평가분류원에 관세평가과 · 품목분류1과 · 품목분류2과 · 품목분류3과 · 품목분류4과 · 수출입안전심사1과 및 수출입안전심사2과를 두되, 관세평가과장 · 품목분류1과장 및 수출입안전심사1과장은 <u>서기관</u> 또는 <u>행정사무관</u> 으로, 품목분류3과장 · 품목분류4과장 및 수출입안전심사2과장은 <u>행정사무관</u> 으로, 품목분류2과장은 <u>공업사무관</u> 또는 <u>행정사무관</u> 으로 보한다.	② ----- ----- ----- ----- ----- ----- ----- <u>과학기술서기관</u> · <u>서기관</u> · <u>공업사무관</u> · <u>해양수산사무관</u> · <u>전산사무관</u> · <u>방송통신사무관</u> 또는 <u>행정사무관</u> 으로, 품목분류2과장 · 품목분류3과장 · 품목분류4과장 --- <u>공업사무관</u> · <u>해양수산사무관</u> · <u>전산사무관</u> · <u>방송통신사무관</u> - ---.
제11조(세관) ① ~ ⑪ (생략)	제11조(세관) ① ~ ⑪ (현행과 같음)
⑫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장 · 담당관 · 조사관 · 검사관은 <u>행</u>	⑫ ----- <u>과장</u> · <u>조사관</u> · <u>검사관</u> 은 <u>공업사무관</u>

<u>정사무관</u> 으로, 분석실장은 <u>과학기술서기관</u> 또는 <u>공업사무관</u> 으로 보한다. 다만, 세관운영과장은 <u>서기관</u> 으로, 감사담당관 · 수출입물류과장 · 통관정보과장 · 여행자통관1과장 · 여행자통관2과장 · 특송우편총괄과장 · 조사총괄과장 · 마약조사1과장은 <u>서기관</u> 또는 <u>행정사무관</u> 으로, 장비관리과장 및 전산정보관리과장은 <u>과학기술서기관</u> · <u>서기관</u> · <u>공업사무관</u> · <u>해양수산사무관</u> · <u>전산사무관</u> · <u>방송통신사무관</u> 또는 <u>행정사무관</u> 으로, 협업검사센터장은 <u>서기관</u> · <u>공업사무관</u> 또는 <u>행정사무관</u> 으로 보한다.	· <u>해양수산사무관</u> · <u>전산사무관</u> · <u>방송통신사무관</u> 또는 <u>행정사무관</u> ----- -- <u>과학기술서기관</u> 또는 <u>서기관</u> 으로, 감사담당관 · 협업검사센터장 · 수출입물류과장 · 통관정보과장 · 장비관리과장 · 전산정보관리과장 · 분석실장 · 여행자통관1과장 · 여행자통관2과장 · 특송우편총괄과장 · 조사총괄과장 · 마약조사1과장은 <u>과학기술서기관</u> · <u>서기관</u> · <u>공업사무관</u> · <u>해양수산사무관</u> · <u>전산사무관</u> · <u>방송통신사무관</u> ----- ----- ----- ----- -.
⑬ 제4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장 · 담당관 · 심사관 · 조사관 · 검사관은 <u>행정사무관</u> 으로, 분석실장은 <u>공업사무관</u> 으로, 감시관은 <u>해양수산사무관</u> · <u>전산사무관</u> · <u>방송통신사무관</u> 또는 <u>행정사무관</u> 으로, 분석관은 <u>공업사무관</u> 또는 <u>행정사무관</u> 으로	⑬ ----- <u>과장</u> · <u>담당관</u> · <u>심사관</u> · <u>조사관</u> · <u>검사관</u> 은 <u>행정사무관</u> 으로, 분석실장은 <u>공업사무관</u> · <u>해양수산사무관</u> · <u>전산사무관</u> · <u>방송통신사무관</u> ----- ----- ----- -----

-----, ----- 세관운영과장
· 감사담당관 · 수출입기업지원
센터장 · 협업검사센터장-----

통관총괄과장 · 통관검사1과장
· 수출입물류과장 · 물류감시과
장 · 장비관리과장 · 신항통관감
시과장 · 신항통관검사1과장 ·
심사총괄과장 · 자유무역협정검
증과장 · 분석실장 · 조사총괄과
장 -----

----- 과학기술서기관 · 서

⑭ 제10항 및 제11항의 규정에
따른 통관지원과장은 공업사무
관 · 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
관으로, 조사심사과장은 해양수
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또
는 행정사무관으로, 그 밖의 과
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대전세관 · 용당세관의 통
관지원과장은 공업사무관 · 전
산사무관 · 행정사무관 또는 관
세주사로 보한다.

⑭

--- 통관지원과장 · 조사심사과
장 및 -----

--- 공업사무관 · 해양수산사무
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
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
다. ----- 공업사무관 · 해양
수산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
통신사무관 · 행정사무관 ---.

신·구정원대비표

■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4]

관세청 공무원 정원표(제33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u>366</u>	• <u>363</u>	-3
•	•	•	
•	•	•	
일반직 계	<u>365</u>	<u>362</u>	-3
•	•	•	
•	•	•	
행정사무관	<u>45</u>	<u>44</u>	-1
•	•	•	
•	•	•	
관세주사	<u>94</u>	<u>93</u>	-1
•	•	•	
•	•	•	
관세주사보	<u>75</u>	<u>74</u>	-1
•	•	•	
•	•	•	

신·구정원대비표

■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4의2]

관세청 공무원 정원표(제33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u>374</u>	• <u>371</u>	-3
•	•	•	
•	•	•	
일반직 계	<u>373</u>	<u>370</u>	-3
•	•	•	
•	•	•	
행정사무관	<u>46</u>	<u>45</u>	-1
•	•	•	
•	•	•	
관세주사	<u>101</u>	<u>100</u>	-1
•	•	•	
•	•	•	
관세주사보	<u>77</u>	<u>76</u>	-1
•	•	•	
•	•	•	

신·구정원대비표

■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8]

세관관서 공무원 정원표(제34조제4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4,799</u>	<u>4,781</u>	-18
일반직 계	<u>4,799</u>	<u>4,781</u>	-18
관세주사	<u>761</u>	<u>757</u>	-4
관세주사보	<u>883</u>	<u>881</u>	-2
해양수산주사보	<u>61</u>	<u>59</u>	-2
관세서기	<u>1,012</u>	<u>1,005</u>	-7
해양수산서기	<u>98</u>	<u>97</u>	-1

관세서기보	<u>772</u>	<u>768</u>	-4
운전서기보	<u>75</u>	<u>72</u>	-3
방호서기보	<u>31</u>	<u>30</u>	-1
사무운영서기보	<u>87</u>	<u>86</u>	-1
전문경력관 다군(X-Ray 검색 및 관독 담당)	<u>132</u>	<u>139</u>	+7

신·구정원대비표

■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8의2]

세관관서 공무원 정원표(제34조제4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4,809</u>	<u>4,791</u>	-18
일반직 계	<u>4,809</u>	<u>4,791</u>	-18
관세주사	<u>856</u>	<u>852</u>	-4
관세주사보	<u>904</u>	<u>902</u>	-2
해양수산주사보	<u>62</u>	<u>60</u>	-2
관세서기	<u>991</u>	<u>984</u>	-7
해양수산서기	<u>95</u>	<u>94</u>	-1

관세서기보	<u>692</u>	<u>688</u>	-4
운전서기보	<u>75</u>	<u>72</u>	-3
방호서기보	<u>31</u>	<u>30</u>	-1
사무운영서기보	<u>62</u>	<u>61</u>	-1
전문경력관 다군(X-Ray 검색 및 관독 담당)	<u>132</u>	<u>139</u>	+7